

[사 건 명] 행심 2015-36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공개 청구를 이행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5. 9. 17. ‘■■■군수 ●●●의 선거기간 동안 잘못된 행태(상대당 후보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 등)로 수사에서 ●●●과 친동생, 수행 비서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자해하고 ♀♀의료원에 입원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중학교 내부사태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에게 2015. 9. 22.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0.15. 정보공개를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고, 2015. 10. 26. 우리위원회에서 이관되었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청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2015. 9. 17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의거 2015. 9. 22. 정보부존재 결정통보 하였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15. 9. 17.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9.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에 대해 2015. 9. 22. 정보부존재 결정 하여 통지 하였으므로, 의무이행 심판으로서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